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 10. 18.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일자리의 의의 및 상황 진단	1
II. 일자리 로드맵 기본방향	5
III.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9
< 인프라 >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0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3
< 일자리 창출 : 공공 >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18
< 일자리 창출 : 민간 >	
④ 혁신형 창업 촉진	27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29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36
⑦ 지역일자리 창출	38
< 일자리 질 개선 >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41
⑨ 근로여건 개선	44
< 맞춤형 지원 >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50
IV. 로드맵 이행 계획	54

I. 일자리의 의의 및 상황 진단

1 일자리의 의의 및 중요성

① 일자리는 인적자본 축적 기회 →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

-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성장 역량을 제고
 - * 인적자본 축적계수(단순노무직=0, OECD평균): 준전문생산직 0.81, 전문직 1.31
 - ** OECD 33개국 인적자본지수와 1인당 GDP는 강한 상관관계(상관계수 : 0.709)
-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질 낮은 일자리 유입으로 이어져(이력효과) 빈곤층 전락 초래
 - * 일본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80%가 정규직이 되었으나, 실업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0~50%만이 정규직 재취업('12.8월, LG研)

② 구조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 + 사회적 편의 창출

-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 양극화 ·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경제전문가 39%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17.7월, KDI)
 - ** 실업률 1%p 하락시 출산율 증가(美, %p): (20-24세)1.3 (25-29세)0.9 (30-34세)0.5
- 고용기반 확대는 일을 통한 복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정성 제고(범죄율 하락, 세대갈등 완화) 등 무형의 사회적 편의 창출
 - * 실업률 1%p 상승시 인구 십만명당 강력범죄 14~32건 증가('13년, 美 50개주)

③ 주요국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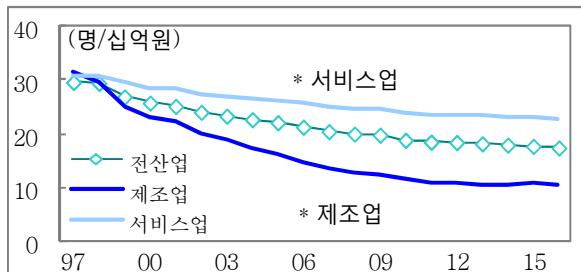
- EU는 중기계획인 'Europe 2020'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고용확대 노력 강화
 - 美 · 中 · 日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 운용
- ⇒ 새정부는 시대적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부' 지향

2 일자리 상황 진단

① [일자리 창출]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지속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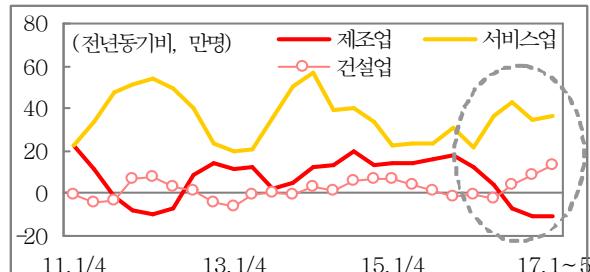
- '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 * 취업유발계수 둔화('97년 대비, %): (제조업) △67.0 (서비스업) △26.1
 - * 제조업(=100)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14년): (한국) 45.1 (OECD 평균) 90.4
 - 저임금 서비스업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건설업(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 창출 견인
 - *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14년) 53.3 ('15년) 33.7 ('16.上) 28.8 ('下) 31.0 ('17.上) 36.3
 - * 건설업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14년) 4.2 ('15년) 2.7 ('16.上) △1.8 ('下) 6.2 ('17.上) 14.4

취업유발계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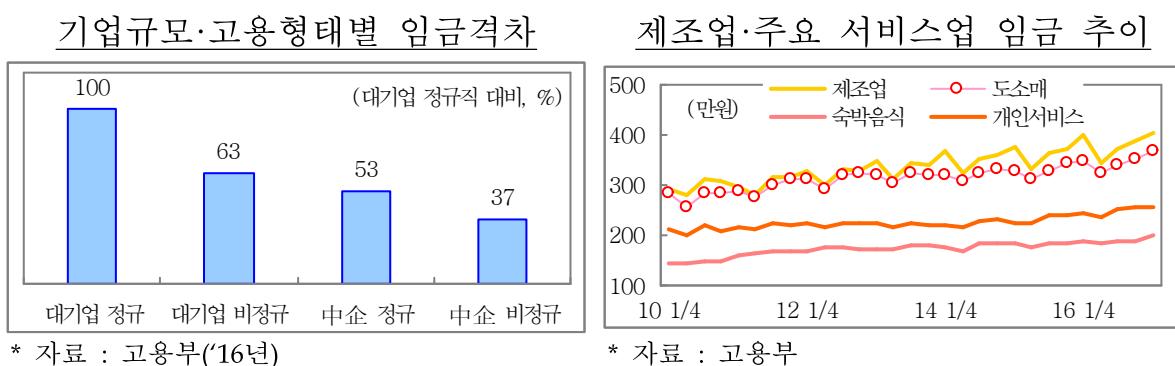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 대기업 · 중소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 가중
 - 수출 주력업종과 대기업 · 제조업 분야는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력 유지에 어려움
 -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4년): (전체) 12.5 (반도체) 3.6 (석유) 1.9 (화학) 6.3
 - * 300人이상 사업체 취업자 증감(만명): ('14년) 11.7 ('15년) 9.3 ('16.上) 15.5 ('下) 4.0 ('17.上) △2.1
-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제약되면서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
 - * 大/中企 영업이익률(%): ('10년) 6.48/3.29 ('13년) 4.66/3.15 ('14년) 4.42/3.12 ('15년) 5.48/3.55
 - *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300인 미만) 35.6 (300인 이상) 13.6

② [일자리 질]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환경 열악 등 고용의 질 저하

-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中企·서비스업의 저임금 고착화
 -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유인 지속
- * 정규/비정규직 증가율(%): ('05~'09년)3.1/1.2 ('09~'13년)2.6/0.7 ('13~'16년)2.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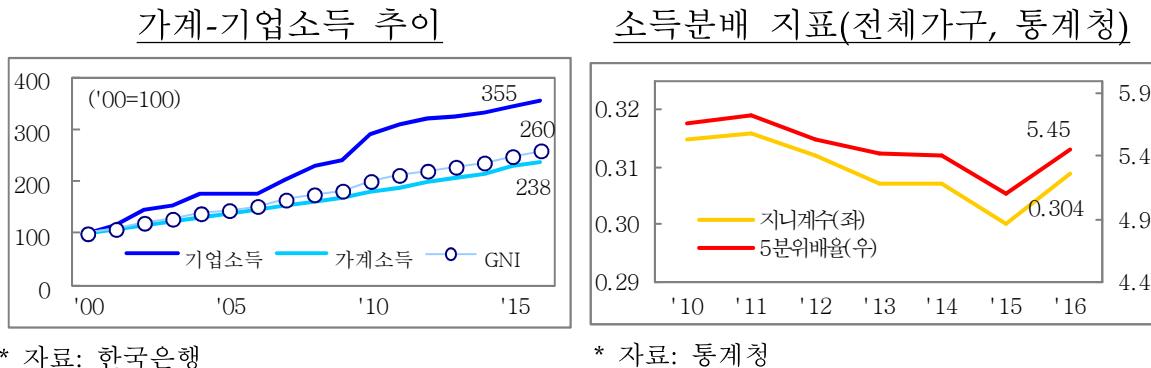


-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저임금 등 법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다수
 - * 연간 근로시간('16년): (韓)2,052 (美)1,789 (日)1,724 (獨)1,298
 - * 최저임금 미만율(% '16년): (10대)23.8 (20대)7.5 (30대)4.3 (40대)6.3 (50대)8.3 (60대~)14.4

③ [취업계층] 고용의 양적·질적 악화 → 취업애로, 소득양극화 심화

-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계층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
 - ① (청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17.8월 9.4%, 고용보조지표3 22.5%) 가운데 中企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 ② (여성)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제활동참여 저조
- * 여성 경활률(15~64세, '16년, %): (한국) 58.4(남성 대비 △20.5%p), (OECD) 63.6
- ③ (신중년) 조기퇴직 압력에도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은 미흡하여 준비없는 창업,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는 상황
- * 55세 이상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4년)7.8 ('15년)△2.5 ('16년)7.6 ('17.上)13.4

- 고용둔화 및 취약계층 어려움 등으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해 일자리-분배-성장이 상호제약되는 상황 유발
 - * '00~'16년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 '16년 이후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소득분배 악화 전환
- * 1분위 근로소득('11년=100): ('13년)108.6 ('14년)114.5 ('15년)119.8 ('16년)108.1 ('17.1/4)98.0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통계청

④ [향후여건]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추가 약화 가능성
 - *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감소: ('00~'15년)3.9%→('16~'25년)1.9% (한은, '17.7월)
 - *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인적자본 저하: 연 0.9 ~ 1.1% (직능개발원, '16.8월)
 - * 인적자본 증가 둔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연 0.3%p 하락(40개국, IMF, '17.4월)
-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및 무인화 흐름 속에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중숙련 이하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 경쟁 심화 예상
 - * '20년까지 전세계의 일자리 514만개 감소(716만 ↓, 202만 ↑) 예측('16.1월, WEF)
 - * 취업자비중 전망('05→'25년, %, 고용정보원): (관리) 2.6→1.3 (판매) 13.7→11.6 (기술) 10.3→8.5 (농어업) 7.5→3.5 (사무) 14.8→17.2 (전문가) 15.7→21.1

⇒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혁신성장을 가속화하여 '일자리 - 분배 - 성장'의 선순환 복원 필요

II. 일자리 로드맵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 개선

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이 일자리효과로 이어지도록 국정시스템 재설계
- 전직·실업에 대한 불안을 덜고 재취업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기업이 필요로 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②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자본의 부담 없이 창업·新산업·高부가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제3섹터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 마련
-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과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을 지원

③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 비정규직 감축,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 및 휴식이 있는 삶 보장

④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 고용애로^{*}·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新중년 인생 3모작 여건 조성

* 25~29세 청년인구 : '17~'21년 38.8만명 증가(에코붐 세대효과), '22~'26년 37.2만명 감소 → 향후 4~5년이 청년고용의 애로시기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

2 로드맵 의의 및 주요 특징

① '일자리 중심 경제'의 구체적 실천 계획

-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전략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 제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
 - * ① 일자리 중심 경제 및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의 3대축인 ② 혁신성장, ③ 공정경제 부문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를 포괄

② 일자리정부의 정책 지침

- 5년간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추가 발굴될 일자리 정책과제의 지침역할을 수행하여 로드맵에 포함된 기존 정책과제와의 정합성·일관성 확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일자리 업무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정책 역량 결집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對국민 약속

- 관계부처 협업·전문가 참여·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통해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로드맵 수립에 주력
-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행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 모니터링 기반 마련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를 추가·보완(Rolling Plan)

[참고]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과정

① [작업체계] 일자리위원회 · 수석실 신설 + 로드맵 작업반 구성

- ◇ 일자리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5.10, 대통령 1호 업무지시) · 일자리수석실 신설(5.11)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5.24)하여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 마련
 - * ①일자리 상황(고용률, 실업률 등), ②일자리 창출(취업유발계수, 취업자증감 등), ③일자리 질(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 ④경제지표(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 '일자리 100일 계획'(6.1)을 통해 단기과제는 조속히 성과를 가시화하고 중장기과제는 로드맵을 마련
 - * 일자리위원회를 개최(8.8)하여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 既 확정 · 발표
- 11조원 추경('17.7) · '17년 세법개정안('17.8) · '18년 예산안('17.8)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지원
- ◇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정책과제 발굴 · 조율을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작업반 구성

- * ①총괄(일자리정책 전략, 분야별 정책방향, 대외메시지 등)
②일자리인프라(일자리 중심 국정체계, 교육 · 훈련, 일자리 안전망 등)
③민간일자리(혁신형 중소 · 중견기업, 서비스산업 혁신, 규제혁신, 사회적경제 등)
④공공일자리(현장민생공무원·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정규직 전환 등)
⑤노동시장(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총괄분과

일자리위원회,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KDI, 노동연 등

일자리 인프라 분과	민간 일자리 분과	공공 일자리 분과	노동시장 분과
고용부 고용실장(주재), 관계부처 국장, KDI, 교육개발원 등	산업부 실장(주재), 관계부처 국장, 산업연, STEPI 등	기재부 차관보(주재), 관계부처 국장, 조세연, 노동연 등	고용부 노동실장(주재), 관계부처 국장, 노동연, 고용정보원 등

② [정책과제 발굴 · 협의]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 구체화

- ◇ 일자리정책 로드맵 작업반 회의를 각 분과별로 개최
 -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로드맵 추진방향,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선정 및 부처간 의견 협의 · 조정
- ◇ 일자리정책 TF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로드맵 준비상황 점검
 -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과제 중 핵심 쟁점을 조정하고 추가 정책과제 발굴
- ◇ 균형된 시각(현장 · 전문가 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노동계와는 비정규직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
 - * 한노총(6.20)·민노총(6.23)·비정규직노조(7.6)·금호타이어노조(7.19)·쌍용차노조(7.27) 간담회, 노동계 로드맵 검토회의(9.1, 9.28, 10.13) 등
 - 경제계와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新산업 성장역량 확충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협의
 - * 경총(6.19)·무역협회(6.26)·대한상의(7.10) 간담회, 유턴기업(8.30)·규제혁신(9.4)·서비스업(9.6) 간담회, 경제계 로드맵 검토회의(9.14, 9.26) 등
 -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사회서비스 관계자 의견 수렴
 - * 지자체(7.6), 공공기관(7.6), 보건의료(7.21, 7.27), 보육(8.14), LH공사(9.13) 등
 - 사회적경제 관련 관계부처·유관단체·민간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 금융분야(7.12, 8.2), 인재양성분야(7.27, 8.25), 자활기업(7.28), 협동조합(9.5), 사회적기업(9.18) 등

III.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 정책과제 구성체계 >

① 일자리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 선정

-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일자리 관련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자리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선정
-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의 양 확대, 질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분야로 하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

② 10대 중점과제를 뒷받침할 100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10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00개 세부 추진 과제 구성 → 향후 별도의 대책수립 과정을 통해 구체화
- 연차별 이행목표와 법령 제·개정, 별도대책 수립 등 이행계획을 설정하여 차질없이 실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
일자리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인프라 구축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일자리 창출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개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양적·질적 일자리 효과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기업은 지원자격을 제한
 - 공공부문 업무평가 시스템도 일자리 중심으로 정비

① [재정] ①일자리 중심 평가 및 ②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

- 고용영향평가 등 재정사업의 일자리 중심 평가 강화
 -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 (예산사업) 평가대상을 확대('17년: 249개 → '18년: 1,000여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
 - (법령 제·개정) 고용영향평가 도입(체크리스트 활용) → 부정적 영향이 큰 법령은 심층분석 후 개선권고
 -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일자리 지표(고용유발 효과,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배점 상향 조정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R&D사업 등
 - 유사·중복 재정일자리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 병행
 - * (중앙부처, '17년) 185개, 17.1조원 / (지자체, '16년) 4,186개, 2.7조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효율화 방안' 수립(매년上) → 예산편성 반영

- R&D · 중소기업 · 지자체 예산편성시 일자리 비중 확대
 - R&D 지원기업 선정시 일자리 관련지표 비중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17년, 16.6조원)의 일자리 관련 평가 비중 확대
 - * 중기부 주요사업에 도입('18년)후 전부처·지자체 지원사업으로 확대('20년)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자체 배분시 일자리 성과 반영

② [세제] 세제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구 분	주요 내용
일자리 창출	•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에 비례해 2년간 세액공제
일자리 질 향상	• 정규직 전환·경력단절여성 재고용·근로소득 증대 등 지원 강화
일자리기반 확충	• 고용연계 창업중소기업 지원 강화, 벤처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 신설 또는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 대상

③ [금융]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일자리 우수기업에 국책금융기관 등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 *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 신규 도입(수은),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지원대상 확대(중진공·신보·기보) 및 응자한도 확대(중진공)
- 국책은행 경영평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평가를 대폭 강화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일자리 효과가 높은 신성장 부문 지원을 추가하여 확대

④ [공공조달·인허가] 일자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
 - *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 확대(5 → 7점)
 - 임금체불 등 질서 위반시 감점 확대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법 위반시 입찰 제한
 -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도입

- 정부 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양·질) 계획을 검토, 평가에 반영
 - * 재정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시 담당인력에 대한 급여수준,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경우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제공*
 - * (예)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휴게시간초과근로 등 처우개선 평가항목 비중 상향(20→40%)

5 [평가모니터링] 일자리 중심 기관평가 시스템 구축 및 통계 확충

- 정부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
 - ①‘일자리 창출’ 분야 신설(20점), ②일자리 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50점)에 포함, ③규제개혁(10점)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평가
- 지자체 합동평가시 기존 중점과제 분야 내 평가지표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 지표를 별도 분야로 신설
 - * (기존) 중점과제, 일반 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 등 9개 분야 평가
→ (개선) 일자리 창출, 지방 규제혁신 2개 분야를 추가하여 11개 분야 평가
 - 전체 평가요소 중 일자리 창출 비중 상향 조정(4.3→9.1%)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17.7월)
 - 평가지표에 일자리 항목을 가점으로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노력 등도 평가에 반영
- 중앙부처와 지방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 지정·설치 및 주요기업·공공기관의 일자리동향 등 파악을 위해 상황판 보완
- 일자리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사전법제심사,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 적극 지원
- 일자리 창출 관련 포상을 강화하고, 일자리 통계를 확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고용탑’(신설) 수여, 일자리 창출 기여자(국민·기업인·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확대 추진
 -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위해 질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 개발(‘17.4/4)
 - ‘대한민국 일자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일자리 동향·증감·이동 분석이 가능한 세분화된 일자리 행정통계 개발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 ◇ 일자리 안전망이 사각지대 없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충
- ◇ 기업의 수요와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구축

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非적용대상자의 고용 안전망 적용 확대

구분	대상	개선방안
고용 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직종(9개)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후 1년 → 5년 이내로 가입요건 완화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와 같이 임의가입 허용 *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자(16년 34,731명)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종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자발적 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산재 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직종 확대 및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 (현행) 적용제외 신청시 모두 허용→ (개선) 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限
	1인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직종 확대(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 두루누리 사업 확대 등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지원대상 확대 및 미가입자 중심 지원
* (현행) 140만원 미만 → (개선) 160만원 미만
-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 능력빈곤층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단계적 전환
* '17~'18년 청년구직수당(30만원 × 최대 3개월, 취성패 연계), '19년 청년구직수당 (60만원 × 최대 5개월), '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저소득층 포함) 도입
- 근로시간·장소 등 근로자 중심 사회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방안 마련('18.上)

② 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 고용보험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 구직급여 인상(평균임금 50→60%), 지급일수* 연장(30일 이상)

* (현행) 구직급여 지급일수 90~240일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 (예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 →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

-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재정수지를 감안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구직급여 상하한액 및 실업급여 기여요건, 보험료율 조정 등 종합 검토

- 산재보험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복귀지원 확대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에 '추정의 원칙' 적용*,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현행) 업무-질병간 의학적 인과관계 필요 → (개선) 특정기준 충족시 인과관계 인정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복귀지원금·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확대

* (현행) 지원대상 1~12급, 30~60만원(직장복귀)·45만원(적응)·15만원(운동) → (개선)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 검토

③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고용서비스 부문의 OECD 수준 확대(GDP 대비 고용서비스 예산 비중: 韓 0.05, OECD 0.13%)

-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상담 전문인력 충원,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및 지역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취업상담·알선 제공

- 실업급여 지급에서 구직자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의 업무기능 개편(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복지⁺센터 단계적 확대 및 일자리 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신설

⇒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계획’ 마련(‘18.下)

- 실직 건설기술자의 국내·외 취업알선(건설워크넷) 활성화*
 - * △건설실직자(21만명)에 대한 경력 DB와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취업지원 사업 지원(‘19년)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외국건설회사 연계 시범사업 실시(‘18.下)
- 민간위탁 고용지원 서비스의 품질 제고
 -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기관 품질기준 마련·인증,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담사 교육 확대

④ 현장수요 맞춤형·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특성화고, 폴리텍 등에서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추진
 -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특성화고 확대(‘16년 3개→‘17년 20개)
 - * 특성화고 우수졸업생에게 전문교육(2년) 실시→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2년)
 - 뿌리산업,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도입(‘18.3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의 고숙련·후학습을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일학습병행제 과정 확대(‘17년 3개 → ‘22년 60개)
 - * 도제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제(전문대 수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고 사회맞춤형 학과(주문식 교육과정)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세제지원 확대
 -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등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폴리텍 구조 개편(매년 3개 신기술 학과 신설)

-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에 역량을 갖춘 민간 선도훈련기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실시('18년 1천명)
 - *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선도 훈련기관(대학교, 기업, 민간 훈련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 후 고급훈련 실시
-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고급훈련 및 체계적 현장훈련^{*(SOJT)} 확대(재직자 직업훈련 개편방안 발표, '17.4/4)
 - * 재직 근로자가 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하우를 체득하는 OJT 훈련방식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유사업종·직무 등에 적용하는 훈련방식
- 미래 인력수요 전망과 연계하여 인공지능특성화 대학원(가칭) 설치 추진
 - * 대학 ICT 연구센터도 지능화 ICT융합형 연구센터로 개편·확대
- 학생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 보장으로 혁신형 인재 양성
 - 희망학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제 연계학기 운영 확대, 대학의 자율적 혁신지원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 융합교육과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사개편 확대
 - * 다학기제, 집중학기제, 유연학기제 및 융합전공제 등 도입('17년)
- 학교가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지원
 - 대학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펀드 확대('18년, 200억),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 창업희망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과 장려금 지원('18년, 286억)

5. 全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체제 마련

- 全 생애단계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 장기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검토
 - *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17.12월)
 - 주요 생애전환기(매 10년)에 경력경로 설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진단, 상담, 교육 훈련 시스템 마련('18년 시범실시, '19년 의무화)

- 신중년의 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18년 4개 캠퍼스) 및 기초 ICT 훈련('17년 600명 → '21년 4,000명) 확대

- 직업능력개발의 사각지대 해소

-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직무역량을 제고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운영('18년 플랫폼 구축, '19년 본격 운영)
-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교육비 지원('18.3월~), 영세 자영업자·특수 형태고용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계좌 신설('18년) 등 추진

⑥ 체계적 미래인재 육성 ·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일자리 · 인력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수요를 중심으로 산학연정 연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신규 전망('17.末, 2년 주기, 매년 수정)
 - * 기술발전에 대한 전문가 공동연구, 전문가 포럼 및 T/F 운영, 관련 설문조사 등을 확대하여 전망결과에 대한 신뢰성 강화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 수요 예측모델 개발 · 활용
 - * 미래유망 직종에 요구되는 역량도출→ 교육 · 경력전환 지원

-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

-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회복을 위해 일부자격 보완·폐지('18년~), 로봇, 3D 프린터 등 미래 유망분야 자격은 지속 신설('17.4/4, 17개)
 - * (보완) 산업트렌드에 맞게 시험과목 보완,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자격 통합·분할 (폐지) 응시인원 및 현장적합, 민간자격 중복 등을 고려하여 활용저조 자격 폐지
-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을 통해 '자격, 학력, 교육·훈련, 일(경험)'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 마련('17년 5개 시범 설계)
 - * SW, 건설, 뿌리, 디자인, 화학 등 5개 분야에 시범적용 및 활용사례 발굴('17년)
→ 기업의 인사관리(채용·승진 등), 근로자 경력개발에 활용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일은 제대로 하되, '과로사회 탈피' 뒷받침
-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청년 고용애로 완화
 - 안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믿고 맡길수 있으며, 노동존중에 앞장서는 '나라다운 나라' 구현
 - 일자리는 생산·소득 확대 등 직접적 편의 외에 인적자본 축적, 가족·사회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의 유발
→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구체적으로 확정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81만명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가 노력

①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 ◇ 국가직 : 경찰 · 부사관 · 생활안전 · 헌법기관 등 충원(10만명)

① [경찰] 치안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타격대 1:1, 기동대 1:0.3),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 충원(2.3만명)

* 범죄건수(만건) : ('11년)175 → ('16년)185

⇒ 강력범죄 검거율을 제고(76→80%), 사건현장 출동시간 단축^{*},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수준으로 감축^{**}

* 현장출동시간 : ('17년) 6분51초 → ('22년) 5분40초이내

** 1만대당 사망자수(명) : ('17년)1.8 → ('22년)1.0

② [軍부사관]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양성(2.6만명)

* 청년인구 감소로 '23년부터 연간 2.3만여 명의 현역자원 부족 예상

⇒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전환하여 병력은 줄이면서도 전투력 강화

③ [교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정원에 못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영양·상담 등) 중심으로 인력 충원(2만명)

* 국공립 취원아 수 비중 확대 계획(%) : ('16년)24.2 → ('22년)36.2

** 교사 확보율(%) : (특수)79, (보건)74 (영양)52 (사서)19 (상담)22

⇒ 학부모 만족도 제고*, 특수·비교과교사 충원으로 공교육 질 제고

* 유치원교사 만족도(점, 5점) : ('17년)4.60 → ('22년)4.80

④ [생활안전 등] 임금체불 신고사건 급증*, 소포물량 증가 등 집배원 업무부담 증가, 메르스·AI·구제역 등 감염병 발생 증가** 등에 대응하여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 충원(3.1만명)

* 근로감독관 1인당 신고사건이 283건 → '08년 대비 21.5% 증가

** 급성감염병(명, 10만명당) : ('05년)27.7 → ('16년)201.5(7.3배↑)

⇒ 임금체불 처리기간 단축(48.1→ 30일이내) 등 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지방직 : 소방 · 사회복지 · 생활안전 등 충원(7.4만명)

① [소방] 업무량 급증, 법정정원 미충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19 구급대 등을 충원(2만명)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상 기준 대비 1.7만명 부족

** 소방관 출동을 위해서는 운전자1, 진압인력2, 안전점검1 등 4명이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2명 출동하여 안전점검 없이 화재 진압하는 사례 빈발

⇒ 긴급구조역량 강화* 및 화재 ·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소방차량 도착시간 : ('17년)7분 26초 → ('22년)7분이내(골든타임 7분)

[2] [사회복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상존, 일본의 1/4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규모((韓)0.7 vs (日)2.9, 1천명당)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 충원(1.9만명)

⇒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복지상담(만건) : ('17년)107 → ('22년)127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명) : ('17년)623 → ('22년)356

[3] [생활안전 등] 재난안전* · 보건 등 지역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등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3.5만명)

* 지진발생(회) : ('80년대)16 → ('06-'15년)53.4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향상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충원에 총17조원 소요(국비 8.6, 지방비 8.4)

[2] 보육 ·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 1단계 : 보육 · 요양 ·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17만명)
⇒ '17년 추경 및 '18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1] [보육] 국공립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 충원(6.4만명)

*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 '14년) : (한국)16(어린이집 13.6), (OECD 평균)68.4

⇒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7년)13.6 → ('22년)40.0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만가구) : ('17년)6.1 → ('22년)8.1

[2] [요양] 고령화에 따른 요양대상 노인 및 치매환자 지속 증가를 감안,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돌보미 등을 확대(4.1만명)

* 장기요양 대상자(만명) : ('10년)32 → ('14년)42→ ('16년)52
치매환자수(만명) : ('10년)47 → ('14년)61 → ('17년)72

⇒ 치매환자전문 요양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국가책임' 뒷받침 등 국가가 책임지는 요양서비스 구축

*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1인당 치매환자(명) : ('17년)885 → ('22년)147.6 (1/6 수준)

[3] [장애인] 장애인 활동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 장애아동 증가 등에 따른 돌봄·요양 등 서비스 다양화(2.4만명)

* 18세미만 장애인 신규등록 인원(천명) : ('11년) 6.5 → ('13년) 7.0 → ('15년) 7.8

⇒ 장애돌봄 수혜자수를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만명) : ('17년)6.6 → ('22년)9.8
장애인 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수혜자(만명) : ('17년)5.6 → ('22년)6.7

[4]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분만 취약지역이 상존함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강화 등 충원(3.5만명)

*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명) : (한국)6.1, (OECD 평균)15.0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6배 확대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 실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대폭 확대 등 의료의 질과 건강서비스 접근권 향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표 병상 수(만병상) : ('17년)1.8 → ('22년)10.0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명) : ('17년)67 → ('22년)29

**[5] [환경·문화 등] 숲 해설사, 생활체육강사,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인력 등 총원(0.6만명)**

⇒ 다양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명 확충에 총 10.2조원 소요(국비 6.2, 지방비 4.0)

**◇ 2단계 :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 추가 확충(17만명) ⇒ '19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 '사회서비스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설립 추진('18.下)

-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근거 및 절차, 주요기능,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법령 제정 추진
- 중앙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하여 표준운영 모델·운영 지침 마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방공단 설립·운영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공단^{*}은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운영, 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 경영·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지역별 복지 수요,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 규모를 결정하고,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은 분야와 참여도가 높은 지역부터 공단을 우선 설립

□ 공공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 확대, 전달체계 보강 등을 통한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원

- 분야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
 - * (예) 노후설계 지원, 스포츠·문화 향유권 제고, 산림·환경 복지 향상 등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연구 실시(~'17.末),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17.10월~)

③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① [직접고용 전환 등] 상시·지속 업무^{*}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

* (기준) 연중10~11개월 이상, 과거2년+향후2년 → (개선) 연중9개월 이상, 향후2년 이상 계속

- 우선 '17년 말까지 7만명 내외, 5년간 총 20만명 수준 전환 예상

<단계별 정규직 전환 계획>

구분	대상기관	추진 일정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및 실태조사 완료 → 로드맵 발표(10월)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17년 실태조사(12월), '18년 전환기준 마련후 추진
3단계	민간위탁기관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전환기준 마련후 추진

-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환하되, 대규모 컨설팅팀(500명 규모)을 구성하여 조정·중재·컨설팅 등 지원
 - (파견 용역) 조직규모 특성 등 고려하여 직접고용, 자회사 등 결정(계약만료 시점 전환)하고, 생명·안전업무(폭발물처리 등)는 직접고용
 - (기간제) 기간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적용(상시·지속 업무 범위 확대)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가급적 '17년내 전환)
 - (무기계약직)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직군, 임금, 승급, 교육 훈련 등) 도입 및 처우개선으로 조직융화 사기진작
- 전환실적 모니터링,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체계적 과제관리
 - 소요재원 반영, 공공부문 평가제도 개선, 관련 법령·규정(계약사무 규정 등)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정규직 전환의 장애요인 해소

② [공기업 · 준정부 · 기타 공공기관 인력 충원]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6~8만명 확충

- (국가 공공기관) 우선 금년 하반기에 자체재원으로 충당가능하고 충원이 시급한 기관 중심으로 2,500명 추가 충원
 - * 충원규모(명) : ('14년) 6,849 ('15년) 5,511 ('16년) 5,916 ('17년) 8,568
 - 기능점검 분석과 연계하여 '중기 인력운영계획('18~'22년)'을 수립하면서 충원규모 산정('17.11월)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보건의료, 생활안전, 재난방지, 검역 등), 4차 산업혁명 대비(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출연연 연구인력 등), 중소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등)를 중심으로 충원
- ※ 공기업(한전, 도로공사, LH 등)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가능하고, 일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정부 예산지원 필요
- (지방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청년의무고용 비율 등을 경영 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 (기존) 경영성과 등 효율성 평가 + (추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평가

③ [근무시간 단축] 정부기관 근무시간 단축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

- 불필요·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범정부 업무혁신을 추진하여 업무생산성 제고 및 실질적인 근무시간 단축 지원
 - * 보고체계 효율화, 비효율적 회의·문서작업 축소, 불필요한 대기관행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
-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 마련
 - * 총액인건비제도를 개편하여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나누기 등에 활용

⇒ '근무혁신 T/F(인사혁신처장 단장)'를 운영, 세부방안 마련('17.11월)

<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 >

(단위 : 만명)

구 분	연도별 충원계획				내 용	
	합계	'17년	'18년	'19-'22년		
합 계	17.4	1.27	2.97	13.16		
소 계	10.05	0.82	1.8	7.43		
국 가 직	경 찰	2.3	0.2	0.35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경찰 대체인력 ▶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수사인력 등
	軍부사관	2.64	0.07	0.39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인력
	교 원	2.0	0.3	0.35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필요한 유치원교사 ▶ 특수·비교과 교사 법정기준 부족인력 등
	생활 안전 등	3.11	0.25	0.71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인력 등
지 방 직	소 계	7.35	0.45	1.17	5.73	
	소 방	2.0	0.15	0.36	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준 부족인력 ▶ 119구급대 인력 등
	사회복지	1.9	0.15	0.1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사회복지 인력 ▶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
	생활 안전 등	3.45	0.15	0.66	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생활안전 행정수요 인력 ▶ 가축 전염병 등 대응인력 등

※ '18년 지방직은 '17.12월에 확정, '19~'22년 충원규모는 행정수요,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공일자리 중원 효과 >

◆ “앞으로 5년, 공공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

구 분	주요 지표	'17년	'22년	
현장민생공무원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량 도착시간(골든타임 7분) ▶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명, 10만명당) ▶ 심정지 응급환자 생존율(명, 1,000명당) 	7'26" 4.11 83	7'이내 3.89 93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 검거율(%) ▶ 현장출동 시간(분, 초) ▶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만대당) 	76 6'51" 1.8	80 5'40"이내 1.0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사 학부모 만족도(5점만점) 	4.6	⇒ 4.8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복지상담(만건, 연) ▶ 민생현장 1인당 복지대상자(명) 	107 623	127 356
	근로감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처리기간(일) 	48.1	⇒ 30이내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수(개소)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 	2,859 13.6	5,469 40
	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1인당 치매환자(명) 	885	⇒ 147.6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혜자수(만명) 	6.6	⇒ 9.8
사회서비스	공공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수(명)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목표 병상 수(만병상) 	67 1.8	29 10.0
	비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 	19.5	⇒ 10이하
정 규 직 전 환 등				

4 혁신형 창업 촉진

-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 창업가, 벤처캐피탈, 기업 등 민간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 등 간접적 후원 기능에 집중

①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개편(벤처법 개정)
 - *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평가
- 민간 투자를 전제로 선정하는 TIPS 모델^{*}을 확산하고, 창업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민간-정부’ 역할 분담방안 마련
 - * 민간이 선별(VC 투자)하고 정부는 R&D 및 마케팅 등을 후속지원(최대 9억원)
-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에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창업활동 촉진(‘18년)
 -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장비를 갖춘 창작공간

②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 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마련(‘18.上)
 - * (교수) 창업휴직기간 확대, 창업실적 등을 대학평가 및 LINC⁺ 평가지표에 확대반영 (연구원·공공기관)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창업촉진 인사제도 평가 우대
-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 공영 흠크리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의 창업초기 · 혁신기업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18년)
 - 기술력 및 동산담보 등에 기반한 은행권 여신공급 활성화

③ 창업위험 분산 및 재기 지원

-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 등 분야에 대해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펀드조성 확대
-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기능 강화
- 창업법, 벤처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 규정을 일원화
 - * (가칭)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17.12월 정부안 마련)
-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중진공 융자, 신·기보 보증 등)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 ('18.上)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 유도^{**}
 -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평가 상위등급 기업 등에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17.8월) →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18.上)
 - ** 연대보증 면제실적 우수은행 정부포상 등
- 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실화하여 안전망 강화('18.12월)
 - * (현행, '13년 개정) 900만원(월 150만원 × 6개월)

④ 창업부담 및 규제 혁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등의 진입 · 행위규제 완화
 - * 엑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 출자 허용('17.8월), 창투사의 설립 자본금 완화('17.10월), 전문인력 자격 완화('18.下), 투자 금지업종 최소화('18.下)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연장 및 대상확대 추진('17.4/4)
 - *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창업기업 재산세 감면 확대(50 → 100%) 등 세제지원 강화

⇒ '혁신창업 종합대책' 발표 ('17.10월말~11월초)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 서비스업 육성

-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확대하고,
高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선점으로 새로운 일자리 분야 개척
- 외투·유턴·수출 등 정부지원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1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정부합동지원반(정부·지자체·경제단체·협·단체)을 구성, 일자리 창출
연계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밀착지원
- * 업종별 간담회(8~9월, 7회)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대 주력업종에서
일자리창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 주요 업종별 투자·일자리 창출 계획(~'22년) >

업종	민간 투자계획(안)	정부 지원계획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낸드메모리, OLED 패널 등 첨단설비 확충 (80조원 수준)	파워반도체, 자동차 전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
석유화학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등 (최대 10조원 기대)	첨단 화학소재 기술개발 지원, 전력· 도로·용수 등 인프라 애로 해소

⇒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17.4/4)

- 대내·외 리스크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원
 - 공급과잉 품목은 생산능력 단계적 감축을 유도하고, 기존
인력 재교육 및 타업종 이직* 지원
- * 조선업 퇴직인력 교수채용(연 60명, ~'19년), 중기재취업(총 600명, ~'18년) 등
- 주력산업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으로 기존고용 유지
(기존인력 재배치) 및 신규 분야 진출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건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예시) 핵심기술개발 전략 마련('17.12월), 건설기술 플랫폼 시범사업(BIM 등)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18.上)과 금융지원 확대

②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일자리 창출

-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친환경·스마트카) 평창동계올림픽 수소차 실증('18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K-City', 화성) 구축('18년), 1톤 전기트럭 개발('19년) 등
 - (ICT 신산업) IoT('17년)·5G('19년)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R&D 프로젝트*, AI학습용 데이터 확대 등 AI·빅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17~'23년), 인공지능 플래그십 프로젝트('16~21년) 등
 - (드론)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21년, 고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승객·물류용 드론 등 미래형 비행체 기술개발 지원
 - (스마트시티)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특화단지 구축 지원('18년), 인큐베이팅존 조성('18~'19년)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
- 성장동력사업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재유형화하고, 성장성·혁신성 외 일자리 창출효과 중심으로 재설계
 - 국정과제 이행, 산업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스마트홈, 소상공인용 VR 쇼핑 등 생활과 밀착된 '국민일자리 신산업'을 발굴하고, 선제적 제도정비 및 시장창출* 지원
* 신시장 창출 진입규제 해소, 전문인력 선제적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실증 지원 등
 - 신산업 발굴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 개설("국민일자리 신산업 1번가")
- 대형 공공사업에 클라우드 선제적용('18년~),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22년 100개), 공공SW 발주 개선* 등 SW산업 일자리 창출
* SW가치보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18년)
 - 사이버보안 전문가 1만명 육성 및 사이버보안 적정인력기준 마련
- 정부 R&D로 축적된 '과학기술 스톡' 활용 강화*, 연구산업 및 과학문화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 후속 R&D·사업화 지원, 기업-기술 보유자 매칭, 사업화 전략 수립지원 등

⇒ '과학기술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18.上)

- 환경문제(미세먼지 등) 해결수요 증가, 취약지역 환경투자 확대 등을 환경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
 - 환경일자리 창출계획('17년)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 해결형 신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연계형 일자리 창출 등 추진
- 국방 R&D 확충 및 제도개선, 무기체계 국산화 확대, 수출형 산업 구조 개편 등 방위산업을 미래 일자리 창출원으로 집중 육성
 - * 연구성과의 업체 이전 확대, 성실수행 인정 등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여건 조성, 부품국산화 범위 확대, 수출허가 간소화, 기술료 감면 등 수출지원제도 개선
-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화, 지역 특화품목에 기반한 발전체계 확산 등을 통해 용복합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등 보건산업 일자리 확대

③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수출 촉진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유턴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하여 고용효과 중심으로 재설계
 - (외투·유턴 인센티브) 입지·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고용효과 최우선으로 개편('1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유턴법·조세특례법 개정)
 - * 고용규모를 요건으로 하고, 혁신성장과의 선순환을 위해 신기술, 4차산업 등 지원 우대
 - (외투 유치) 고부가 서비스업*, 그린필드형 등 고용효과 중심 유치
 - * 취업유발계수('14년 韓銀, 명/10억) : (서비스업) 17.3 > (제조업) 8.8

⇒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발표('17.4/4)

- 수출 바우처·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밀착 지원
 - * 취업유발계수('13년) : (대기업) 5.5 < (중소기업) 9.7
 -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및 2.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22년)
-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1,786억원, '17년 도입)의 적용영역 확대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美아마존 등)과 연계, 전자상거래 초보 기업의 입점 마케팅 물류 금융 등 전 주기 지원(연 100개사)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16년 44조원에서 '22년까지 65조원으로 확대
 - * 무역보험 지원규모(중소·중견/전체) : ('16년) 44.3/156.6조 → ('22년) 65/190조

④ 중소 · 중견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 혁신역량 강화 및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 확대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고도화*(~'22년)
 - * 개별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체계 도입, 업종별 구축 및 클라우드화 등
 - 대학 등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한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테크노파크를 기술혁신 지원 중심으로 특화
 - '협력이익배분제' 도입('18년)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고, '(가칭) 네트워크법' 제정('18년) 등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 *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창업기업 수준 지원, 협업 저해 제도 개선 등
 - 사업주가 기업의 경영성과가 발생할 경우, 성과급 주식 등으로 근로자에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18년)
 - * 미래성과공유 표준협약서 및 평가지표 개발('17.12월) → 도입기업 인센티브 마련('18년)
-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 견인 중심으로 재설계
 - 정책금융('17년, 104조원), 공공구매('17년, 86조원), R&D('17년, 3.1조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집중 지원
 -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22년) 및 기술탈취 방지 강화 등 혁신 걸림돌 발굴 개선
 -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 ('17.12월) : 어음대체수단 활성화 → 어음이용 축소→ 상거래상 어음제도 폐지

- 혁신 우수제품에 대해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수출채널 확충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16년, 3.7조원) 등 혁신제품 판로확대
 - R&D 전문기업 등의 직접생산 확인 완화(판로법 개정)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여건 개선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통합 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주요거점에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22년)
- 중견기업(전체고용의 5.5%)의 일자리 지속창출을 위해 성장디딤돌을 강화*하고, 신산업·서비스·지방 중견기업 지원 강화**
 - * R&D, 세제, 수출 등 9개 분야 제도개선 추진
 - ** WC300⁺ 사업 예타심사 결과 반영

- 중견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WC300 선정기업에 대해 R&D·수출·마케팅 등 정책·사업 연계 지원

* (부처) 산업부·중기부·과기부, (기관) KIAT·KOTRA·무협·산은·중견련 등

** 강소·중견기업을 현행 3,900개 수준에서 '22년 5,500개 수준으로 확대 목표

⇒ '새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17.4/4)

⑤ 서비스산업 혁신 및 신서비스 시장 진출

- 펀테크,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 지원 강화
 - 크라우드펀딩 광고 허용(발행기업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이용), 전매 제한(1년→6개월) 완화, 일반투자자 한도 확대* 등
 - * 동일 기업당 연간 200만원 → 500만원, 총 연간 500만원 → 1,000만원
 -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 정비·지원 등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18년)
- 금융산업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지원
 - * 인·허가 절차 등 개선방안 마련('17.4/4), 금융혁신지원법 제정('18.下)

- 업종별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서비스수출전담센터(KOTRA)를 통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등 기업의 해외진출 전과정 지원 강화
- 의료관광 MICE 등 프리미엄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벤처기업 발굴 육성
- 제조 융복합 및 서비스와 ICT 결합 등 업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제조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
 - 제조 · 의료 · 교육 · 문화 등과 ICT 신기술(빅데이터 · VR · 홀로그램 등)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 디자인 혁신 전문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물류 · 유통산업에 AI, 빅데이터, VR 등 첨단 ICT 도입, 물류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유통·물류 서비스 선진화
- * 택배 상.하차 자동화 기술개발, 택배 화물차 적재함 최적화 기술개발('18년~)
- 뉴콘텐츠 발굴·육성, 뉴미디어콘텐츠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스포츠산업 창업·성장·수출 등 지원 강화
 - 문화기술 R&D를 확대하고, 게임부스트센터('18년)·웹툰 캠퍼스('18년)·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20년) 등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 스포츠산업 지역창업지원센터 구축, 창업 교육 및 보육 지원, 초기 창업자 선정 지원, 수출 기업 육성 등 추진
- 해운서비스업을 조선 및 수출입 제조기업과 연계 결합하여 산업간 상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
 - * 해양진흥공사 설립('18년), 선박대체 건조시 친환경보조금 제도 도입('18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마련('17.4/4)

⑥ 규제혁신

-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 전환) 포괄적 규제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을 위해 일반법 제·개정, 개별법률 개정 등 추진
 - *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17.10월) 및 전환대상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17.4/4) → 법령 개정 추진
 -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 해소) 신산업규제혁신 위원회 기능확대 및 전문성 보강을 통해 핵심규제 지속 타파
 - * (예)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동의 원칙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제한되어 빅데이터 분석 곤란 → 사후동의 방식 도입 및 비식별 조치 법적 근거 마련
-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 * 시범사업 : 시범사업 주체 전환(정부→민간)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활성화(산업융합법), ICT분야 사후규제(네거티브 원칙)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ICT융합법)
 - * 임시허가 : 임시허가 기간 연장(최대 2년 → 최대 4년)
 -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 * △ 소관부처가 모호한 융합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담 △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17.4/4,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미래 시점에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드론·AI 등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추진(국조실)
 - * (예)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제도 변경 △안전한 자율주행 목적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등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애로 적극 해소
 - (대·중견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적극 발굴·해소(산업부·경제단체)
 - * (예) S반도체 연결도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2천개 증가 및 7천억 투자
 - (소상공인·중소기업)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규제*는 우선 해결(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중기부)
 - * (예) 인증제도 관련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실태 현장조사 후 개선 추진

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병행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집중 육성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진출 분야 다변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

①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

-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수립·조정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및 회계감사시스템 정립

- (금융접근성 제고) 공적금융제도 확충 및 민간투자환경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 신설 및 투자펀드 확대*, 신보·지역신보의 보증 대상(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자활기업 포함) 및 지원한도 확대** 추진

* 모태펀드 추가조성 100억원 및 사회투자펀드 신규조성 300억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보	(현행) 1억원 → (개선) 3억원	
지역신보	(현행) 5천만원 → (개선) 3억원	(현행) 4억원 → 유지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근거법 제정

*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을 사업비 등 보전(서울시)

- (판로확대)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조달체계 개편,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등 추진

*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임' 가점 상향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물품·용역 입찰 시 수의계약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 (인력양성) 대학을 통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중심의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 5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 개설 및 창업공간·멘토링 지원을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 조성(3개→9개)

②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 (사회서비스) 진입장벽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수탁대상 명시 및 문제법인 수탁금지 신설 등 업무편람 개정
 - * 유급근로자 고용,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등 요건 완화적용 등
- (주거환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보증지원 확대
- (문화예술) 문화공간·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 활성화
- (프랜차이즈)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여 상생·협력기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 (지역기반)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활용을 통한 고용·소득창출
 - 마을기업 확산 및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농·수협을 통해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
 -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하고, 생태관광 협동조합 설립, 환경기초시설 인근 에너지타운 조성 등 추진
- (소셜벤처) 혁신적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봄 조성
 -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전용 임팩트 투자펀드 1,000억원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별도 발표(17.10.18)

7 | 지역일자리 창출

- ◇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기존 지역인프라(산업단지·지역특구 등)는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투자보조금, 지역산업, 지역 인재채용 지원제도를 재설계

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거점 구축

- 혁신도시 혁신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여 강화, 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 * 종합발전계획, 공공기관 지역기여 관련 혁신도시법 개정('18년)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기술적용*, 이전기관·지역 대학 오픈 캠퍼스 등을 추진하여 기업 및 혁신인재 유입 촉진
 - * 스마트 교통제어(김천), 에너지제로빌딩(진주) 등
 -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新성장 일자리창출 거점으로 육성('17.4/4, 균특법 개정)
 - 선정된 클러스터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인재 채용 지원
 - 민간기업 등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실증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조기 창출 지원
- * (예) (전남) 나주혁신도시+에너지공기업+기업·대학 → 에너지신산업 실증

⇒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17.4/4)

- 제조업 고용의 5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청년과 여성인재가 모이는 ‘미래 일자리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 산단 공장의 스마트化를 대폭 확대^{*}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로 고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 확충
 - * 산단 내 스마트化 공장 개수 : ('16년) 1,731개 → ('22년) 13,000개
 -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부(어린이집), 국토부(임대주택), 문체부(문화활동) 등 관계 부처 산단환경개선사업 통합 개편
 - * ('17년) 9개 사업 110억 지원(어린이집 12개 설치 등) → ('18년) 통합·확대
-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 국가산단 조성 추진
 - * 경남(의생명), 충북(당뇨바이오) 등 신규 8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추진('17.8월~)
- 새만금·세종시 등 기존 균형거점 사업의 본격화·확산
 -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및 기반시설 조기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
(세종시) 중앙부처 추가 이전, 교통여건 개선, 첨단산업 유치, 미개발 용지 활용
- 지역특구('04년~, 現 190곳)의 신기술 사업화 기능 확대
 - 신기술에 대한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특례 도입 등 ‘테스트 베드형 지역특구’ 도입('18.上 법안발의)
 - ‘판교 벤처단지’ 모델 전국 확산(~'22년, 3~5개 추가)
 - 구도심을 활용한 스타트업 센터 등 혁신공간 구축 및 세운 상가 등 구도심 리모델링 사업 추진

② 지역 투자·사업 활성화

- 기업의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시·도간 협력사업 개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질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선택·집중, 지원업종제한 완화 등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18.上)

- (시·도간 협력산업) 지역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 산업을 중앙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개편
 - * 기계부품, 의료기기 등 17개 협력산업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14개 협력 프로젝트로 조정
- 도시재생 뉴딜을 통하여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집수리 등 지역 기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조 확립
 - 재정지원 사업기간(3~6년) 이후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여 선순환 구조 형성
 - 도시재생 지역에서 빈집, 빈점포 공간을 활용한 창업, 상업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융자 지원('17년 320억)

③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 고도화

- 지역 여건·실태를 고려한 지역별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확대 및 협의채널 구축
 - * 지역 노·사·민·정이 노사협력, 적정임금 등 고용·노동 현안 논의 및 개선안 수립
 - * (예) 경북형 일자리 : 공공기관 주4일 근무로 일자리 나누기, 도시청년시골파견 등
- 지역 고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토대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별 모델 창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현행 권고 규정인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17.4/4,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 단계적으로 全기관 채용목표 30% 달성('18년 18%→'22년 30%)
 - 지역대학-공공기관간 혁신도시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경자구역,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입지 효율화 및 연계방안 마련('18.下)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 ◇ 우리경제의 일자리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사내하도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이익대변기능 강화

①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및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 →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18년~)

구분	(현행) 기간제한 방식	(변경) 사용사유제한 방식
내용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사용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 가능
합리적 사유	사업의 완료, 결원 대체 등 경우에는 기간제한 예외	⇒ 해외 입법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반영, 현행 기간제법 예외사유 개선
적용 방식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 적용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검토

- 특히,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철도·항공 등)의 경우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18년)
 - * 철도·항공 등 공공안전 직결 분야는 법률에 명시, 그 외 분야는 시행령 위임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 확대를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 (300인 이상 기업) · 기업공시제** (상장기업) 강화('18년~)
 - * (현행) 소속 외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 (개선) 소속 외 노동자 업무내용 추가 공시 및 파견·용역·사내하도급으로 구분하여 공시 추진
 - ** (현행)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 (개선) 소속외 노동자도 공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공공조달제도 개편** ('18년)
 - * 정규직 전환지원금(1인 720→960만원), 세액공제(1인 700→1,000만원)
 - **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 항목 신설

②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금지('18년~)
 - 비정규직이 동종업무를 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없도록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 *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비교대상인 동종 업무를 명확히 규정
 -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 축소
 - 비교대상 노동자의 임금 등 관련 정보제공청구권을 신설하고, 노조·노동자 대표 등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검토
 - 현장의 차별해소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차별해소팀' 설치
- 근로기준법 등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검토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급여 · 연차휴가* 부여 추진('18년~)
 - * (예) 2년차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 → 공제 없이 보장토록 개선
 - 여성 비정규직의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 *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법정기간 급여 보장
사업주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미발급시 고용센터가 대리 청구

③ 사내하도급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등 원 ·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격차 완화
 -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 · 하청 노동자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18년~)
 - * 원청 - 사내 하도급 노동자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고용 승계 등
 -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적정임금, 안전관리 등 원청 책임 강화
 - * 임금체불 시 도급인 연대책임 규정,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협의 대상 포함 등

-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파견·도급 구분기준을 재정립
 - 근로감독관 증원과 연계,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불법파견 감독 강화
 - * 대법원 등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 사업장에 대해 이행상황 점검, 감독 등 지속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18년~)
 - 화물운수업 신규진입시 직영의무화 및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18년)

⇒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18.下)

④ 비정규직 의견 참여 통로 확대

- 미조직·취약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호 및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18년~)
 - 노사 자율로 초기업단위 교섭 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동 위원회의 복수사용자^{*} 교섭단위 통합 지도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 '근로조건이 유사'하거나 원·하청 등 '공동이해관계 하의' 복수 사용자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이익대변 기능 강화
 - 근로자 대표 선출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성·대표성 확보
 -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관리 등 구체적 선출절차 신설,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노동자 참여권 보장 등
 - 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의결사항 강화 등 근로자 이해대변 기구 위상 제고

⇒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개선방안' 마련(18.下)

9 근로여건 개선

- ◇ 임금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출발점으로 접근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내수확대·양극화 개선 기반 마련,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행위 근절
 -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 ◇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제고
 -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고, 휴일·휴가제도 개편
 - * 연간 평균근로시간 : ('16년) 2,052 → ('22년) 1,890시간
-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 강화, 高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등 추진
 - * 사고사망율(만인당) : ('16년) 0.53 → ('22년) 0.37
- ◇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및 제도개선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병행하여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방안 강구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등 추진

* 총 2조 9,708억원,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1명당 月13만원 지원
** 지원기간 연장('17→'20년), 분기당 지원금액 확대 : ('17년) 18만원 → ('20년) 30만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가구 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방안 논의·추진(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현장지도,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지원,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강화

⇒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18.上)

-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과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17.4/4~)

②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 확대
 - 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금 외 징벌적 배상제도(예 : 체불금액 3배 이내)를 신설하고, 미지급 임금 자연이자제 적용 확대(퇴직·실직자 → 재직자 포함)
 - 근로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을 확대('17→'22년, 2→10만개)하고, 정부합동TF 등 최저임금·임금체불 전담체계 마련
-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 계약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계좌 구분관리제도* 도입
 - *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계좌로 지급하고 집행내역을 발주처가 확인
- 체당금 제도확충 및 관련업무 효율화 등 체불 노동자 보호강화
 -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지급기간 단축 등 체당금 제도를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생계보호 강화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 추진
- 체불이 심각한 건설분야에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임금지급 보증제, 적정임금제 등을 도입하여 체불방지 추진('18년~)

⇒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혁신방안' 마련('17.4/4)

③ 공정임금 체계 확립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종별 협회 등을 활용, 업종·산업별 직무평가 표준안 개발·보급
 - 직종·직급별 임금수준 분석, 임금분포 공시제*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인프라 확대
- * 노동시장 파급효과, 노동자 간 이해 상충,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의 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 등 임금분포 공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사업장 확대(지방공기업 등 추가) 및 임금분포 공시제와 연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추진

⇒ '공정임금 및 공정거래질서 구축 정책패키지' 마련('18.下)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체계로 개편 추진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정성 제고
 - * 실태조사추가연구 등을 거쳐 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
 - 전문성, 책임성 등 업무적 특성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고, 기관 특성에 따른 직무분석 및 세분화
 - * 공공행정 부문 직무평가 표준안 개발('17년) 및 직종·직급별 임금수준 분석
- 자치단체 생활임금제 확산을 추진하고, 시중노임단가의 공공 계약 반영 강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내용의 계약예규 반영,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추진

④ 주 52시간 근로 명확화

- 휴일 포함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확대(17년~)
 -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고 특례업종에 대해 주 60시간 상한, 연속휴식시간 보장 등 추진
 - * 광고업, 금융보험업 등 특례 유지필요성이 낮은 16개 업종 제외(26→10개업종)
 - 1차 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마련
- 주 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17년~)
 - 장시간 근로 업종과 특례업종 등 예외 부문을 중심으로 지도 감독 확대(지방관서별 점검단 구성 등)
 - 장시간 근로, 임금 과소지급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17년)하고 지도·감독 강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노동자 부담 완화 지원

⑤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및 근로시간 혁신

- 근로시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18년~)
 - 초과근로를 적립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로 대체 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 * 정부기관은 초과근무 보상휴가제 도입(예: 초과근무 8시간당 연가 1일 부여)
 - 노동자의 상황(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추진
 - * 단축사유 범위, 사용자 의무 및 거부 사유, 전일제 근로 복귀권 등 종합 검토

-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고용을 늘린 기업의 기존인력 소득 감소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휴일·휴가제도 개편, 근로문화 개선 등 노동자 휴식권 보장('18년~)
 - * (예)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 연차휴가 2주 연속사용, 최소 휴식시간제 보장 등
- 민관합동*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
 - * (중앙)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 (지역)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등
 - **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유연한 근무 ④연가사용 활성화 등

⇒ '휴일·휴가제도 개편방안' 마련('18.上)

[6]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혁신

- 산업안전보건 체계 혁신을 통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 추진
 - * 최근 5년 간 산재 사고 사망자수 5,140명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수은 제련 등 高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17.4/4)
 -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17.4/4)
 - * 안전관리 책임 확대(22개 장소 → 모든 장소), 위반시 하청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
 -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18년)
 -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위원회 운영('17.4/4)
 - 건설업종 사망자 감소를 위한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18년)
- 노동자의 정신건강 영역까지 안전보건 보호영역 확대
 -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및 보호법안 제정 추진('17.4/4)
 -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트라우마 관리방안 시행('17.4/4)

7 노사정 대화 활성화 및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 노동존중사회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정비
 - 노사정위원회 논의의제 확대, 운영체계 개편방안 마련
 - 주요 현안·과제^{*} 중심으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정 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
- * (예) 노동시장 격차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등
- 지역 내 노사협력 사항의 논의·실천을 위해 지역 노사정간 대화 활성화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임금·근로시간 등 논의 및 현장 확산 지원('18년~)
 - * (구성) 지역노사, 시민단체, 학계, 지역관서장 등 10~15명(위원장: 자치단체장)
(의제) 지역 고용전략 및 주요현안 논의·의결 (설치) 147개소(광역 17, 기초 130)
 -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구조 실태조사, 노사민정 협의 지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 확대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추진('18년)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
 -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강제노동(제29호·제10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제87호·제98호)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추진
 - 학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전 예방 도모
- * 중·고등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권 반영('18년 검정 교과서 적용 예정), 청소년 근로권익 및 인프라 확대

⇒ 노사정이 협의한 의제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마련('18下)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핵심정책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
- 보상·숙련도·정보 등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요인을 해소하고,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애로 요인 해소

① 청년 : 구직-채용-근속 등 부문별 청년일자리 애로 해소

- (구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 수당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 *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 임금을 정부가 지원
 - * '17년 3천명, '18년 2.2만명 등 5년간 약 15만명 지원(연 지원인원 기준)
 -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국외파견 후 취업에 이르는 보직경로 모델 구축 및 정보제공 강화
 - * 청년들의 해외취업 수요가 높은 유망 국가(예 : 일본) 진출 지원 국제기구 취업 활성화
- (채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한시 상향조정(3→5%, '18~20년) 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공공부문 의무화 '17.4/4)
 - 신규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신직업 발굴 및 정보제공 강화, 창직 활동 및 역량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
 - * 창직 지원과정 별도 개설 및 단계적 규모 확대('17년 730명→ '20년 1천명), 창직 경진대회 개최, 창직우수사례 발굴·홍보, 사후지원 강화 등
- (근속)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시(추가 3년) 세제지원**
 - * (지원대상) 5만명→ 6만명 (지원금) 2년간 1,200만원→ 1,600만원
 - **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 (인프라) 청년단체, 기업,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 수렴 및 홍보 추진*
 - * 청년정책허브센터(한국고용정보원)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관리, 청년단체-대학-기업 연계한 청년정책 홍보 등

⇒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 마련('18.1/4)

② 여성 : 일 · 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보육, 학업·훈련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개선('18.下)

* (현행) 임신(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일 2시간) 및 육아(최대 1년/일2~5시간)만 인정 → (개선) 가족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

** 연구용역('17.下),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제출('18.下)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최대 1→2년),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첫 3달까지 2배)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18.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원

- 임신·난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난임휴가(유급1일 포함 연간 3일)를 도입하고 임신기간에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

- (일할 기회 확대) 경력단절여성 특화 상담, 직업·창업훈련, 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추진 및 여성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적용사업장 확대(공공기관, 500인 이상 + 지방공기업 추가),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제출의무 신설('17.下)

-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 및 시간제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비율(가형~다형) 소득계층별 5%p 인상('18년~), 시간제 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18년~)

⇒ '여성고용 종합대책' 마련('17.4/4)

③ 신중년 : 장기근속, 전직지원 및 신규일자리 확대

- (장기근속)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 단계적 적용 확대
 - * (1단계) 도급·용역근로자 우선 적용 → (2단계)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 검토
- (전직지원) 생애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패키지 지원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퇴직(예정)자의 원활한 직장이동 지원
 - *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다만, 참여수당 지급은 제한)
 - 비생계형·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 *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밀업종 진입억제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지원
- (일자리 확대)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우선고용 직종을 개편^{*}(17.12월)하고, 적합직무 일자리 확대^{**}
 - * 공공기관 우선고용 의무화(47종), 민간기관 정보 제공 및 고용 확대 권고(83종)
 - **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원('18년 시범사업 2,000명)
 - 퇴직전문인력과 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추진
 - * ('17년) 6,000명 → ('18년) 7,000명 → ('19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추진
 - 교육 및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등 신중년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17.8.8, 2차 일자리위원회)

④ 장애인·외국인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외국인력 적정 관리체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국가·지자체(공무원) 부담금 부과 ('20년~), 장애인 훈련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 ('17→'19년) 민간기업 2.9% → 3.1%, 공공부문 3.2% → 3.4%
 -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경증 장애인 장려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 (외국인) 전문성·숙련수준별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통합 비용을 사업주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⑤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 저소득층 등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되도록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임금수준·성별·연령 등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18년)

⑥ 이행기반 구축: 지역별·산업별 거버넌스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발전시켜 지역 일자리 사업 파악·조정·연계 지원 등 지역·산업별 일자리 문제의 효과적 대응
 - * 16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 노·사·전문가·지자체·고용센터 등 참여
-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실천전략'을 마련하고('17.4/4)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
 - 성과우수 지역·산업부터 점진적 자율권 확대 →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단위 거버넌스 중심 일자리 정책 수립·집행

IV. 로드맵 이행 계획

1 이행 점검체계

①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 100개 세부 추진과제별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주관부처는 분기별 이행상황을 일자리기획단에 제출
 -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구성(일자리기획단)하여 현장의 의견 반영
- 로드맵 정책과제 이행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일자리委 상정
 - 이행과정 상의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기준과제의 보완·추가 사항 발굴 논의
 - 보완·추가과제 중 중요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별도 대책으로 발표

②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對국민 소통 강화

- 로드맵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를 일자리委 홈페이지 게재
 - 로드맵 추진성과 평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예: 온라인-오프라인 여론조사)
- 부처별 일자리 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 과제를 일자리 로드맵에 추가 반영
 - * (예)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해결을 위한 현장기반형 정책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카라반('17.10.12~11.8, 국가산단 20개소 방문) 가동

③ 업무평가를 활용하여 체계적 성과 관리

-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 추진과제는 정부업무 평가의 일자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지자체·공공기관의 일자리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부문·기업에 대해서도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강구

2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계획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①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부)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② 타당성 심사 시 일자리 지표 강화 (고용부·기재부)		고용정책기본법 및 하위규정 개정		법령 평가 신설
③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고용부·기재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기준 개편	신규투자사업 일자리중심 평가	
④ 예산편성시 일자리 비중 확대 (중기부·행안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⑤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 (기재부)				일자리관련 R&D 선정 시 일자리점수 확대
⑥ 일자리 중심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금융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평가 강화
⑦ 공공조달, 인·허가시 일자리 평가 강화 (조달청)			적격심사·지정기준 개정	
⑧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 (고용부·법제처)			일자리입법 사전입안지원·사전법제심사	
⑨-1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평가 비중 확대 (국조실)	평가지표 마련		일자리중심 정부업무평가 시행	
⑨-2 지자체 합동평가시 일자리 평가 강화 (행안부)	평가기준 신설		일자리중심 평가 시행	
⑨-3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자리 반영 (기재부 등)	평가편람 마련		일자리중심 공기업 평가 시행	
⑩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고용부)	고용창출기업 인센티브 마련		고용탑 신설·수여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⑪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행안부·국조실 등)	정부·지방조직 관리지침 개정	개정 지침 시행				
⑫ 일자리 통계 확충 (통계청)	고용의 질 지표 개발		일자리통계 개발·개선체계 구축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⑭ 고용·산재보험 보호수준 강화 (고용부)	취약계층대상 적용확대	두루누리 지원제도 개편 및 지원대상 확대				
⑮-1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고용부)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계적 인상					
⑮-2 민간우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고용부)	산재 인정범위 확대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				
⑯ 구직촉진지원제도 개편 (고용부)	고용복지+센터 확충					
⑰ 현장수요 맞춤 인력양성 지원 (중기부·교육부 등)	국가일자리플랫폼 기반 마련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⑱ 미래 유망분야 인력 양성 (교육부·과기부 등)	위탁기관 품질인증기준 구축	시범운영 후 전면 적용('21년~)				
⑲ 혁신형 인재 양성기반 마련 (교육부·고용부 등)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대상)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⑳ 전 생애단계 평생직업 능력개발 강화 (고용부·교육부)	영마이스터 신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연 600명, '18~'22년)				
㉑ 직업능력개발의 사각 지대 해소 (고용부·교육부)	증장기 인력수급전망	4차 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 운영(20개교, '19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고교학점제 운영계획 수립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한국형 나노 디그리모델 개발	평생 경력진단시스템 구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	평생 직업훈련계좌 신설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②2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역량 체계 구축 (고용부 등)	미래 유망분야 자격 신설(17개)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②3 현장민생공무원 국가직 10만명 (행안부·기재부)	국가 현장민생공무원 총원			
②4 현장민생공무원 지방직 7.4만명 (행안부)	지방 현장민생공무원 총원			
②5 사회서비스 1단계 17만명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1단계)			
②6 사회서비스 2단계 17만명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2단계)		
②7 직접고용 전환 등 (고용부)	1단계 전환 추진 2~3단계 실태조사·전환기준 마련		지속 전환	
②8 공공기관 인력 충원 (기재부 등)	중기인력운영 계획 수립(국가공공기관)			
②9 정부기관 근무혁신 (인사처 등)	일자리나누기 활용 강화	초과근무시간 저축휴가제 ·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4. 혁신형 창업 촉진				
③0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중기부·교육부·과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	교수·연구원·기업기술인력 창업 활성화		
③1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 (중기부·조달청)	혁신센터 역할 재정립	공공조달 창업기업 구매 확대		
③2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중기부)	벤처육성특별법 개정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③₃₃ 창업·벤처 자금 조달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 (중기부)	정책목적성 벤처펀드 조성		기술보증기금법 제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③₄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중기부, 법무부)		연대보증 폐지 확대		압류제외 현실화
③₅ 창업·벤처 부담 및 규제 혁신 (중기부)		창업지원법 개정	법인출자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개정
5.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③₆ 제조업 활력 회복 (산업부)	산업 혁신성장 전략 마련			
③₇ 주력산업의 고도화 지원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연 50개, ~'22년)	
③₈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부·중기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강화(~'22년)	
③₉ 중소기업 혁신성장 (중기부·산업부)	R&D혁신방안 마련	온라인 수출플랫폼 구축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지원
③₁₀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해수부·산업부)		해양진흥공사 설립	친환경보조금 제도 확정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및 공공선박 발주 확대
③₁₁ 농어업 융복합 산업화 활성화 (농림부·해수부 등)	스타트업스쿨, 보육매니저 도입		농어촌 관광 콘텐츠·자원 확충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산업화 지구 확대(~'22년)
③₁₂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산업부·중기부 등)				수출바우처 확대
③₁₃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협력경제 활성화 (중기부·공정위)			상생법 개정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확대
③₁₄ 외국인투자 및 유턴제도 개편 (산업부)	투자유치제도 통합방안 마련			외촉법·유턴법·조특법 개정 외투·유턴기업 지원 강화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④5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규제혁신 (국조실·과기부)	규제 발굴 기이드라인 마련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④6 미래형 신산업 육성 (산업부·과기부 등)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④7 서비스산업 혁신 및 신서비스 시장 창출 (기재부·중기부 등)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마련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④8 S/W 혁신·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과기부)		SW산업진흥법 개정	국가디지털전환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16년 37개→'22년 100개)	
④9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과기부)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과학문화사업 생태계 육성방안 마련		
⑤0 금융서비스 경쟁 촉진 및 혁신인프라 구축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규제 혁신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⑤1-1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부·해수부 등)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⑤1-2 콘텐츠·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문화부)	VR 종합지원 센터 조성	게임부스트 센터 조성	웹툰 캠퍼스 구축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구축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스포츠 우수 선도기업 지정·지원 ('18년~)
⑤2-1 환경산업 활성화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계획 확정		환경일자리 창출계획 이행관리	
⑤2-2 보건산업 혁신촉진 (복지부)	제약 등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가칭)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⑤3 방위산업 진흥 (방사청)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⑤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 발전방안	도시개발지원 공사 설립		
6. 사회적경제 활성화				
⑤5 사회적경제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위, 기재부)	사회적기업 신용보증지원 강화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신협법 개정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56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기재부·고용부·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영평가 반영		홈쇼핑·백화점 등 유통채널 연계 강화	
57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기재부·교육부·고용부)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및 대학내 연계과정 구축		
58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기재부·고용부)	사회적경제활성화법 제정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59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기재부·고용부·중기부)		사회서비스·문화예술·프랜차이즈 분야 등 지원 확대		
60 사회적가치 실현체계 구축 (기재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7. 지역일자리 창출				
61-1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제도개편 (기재부·산업부)	지역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특구별 특례 확대 및 기능조정·연계 강화	
61-2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과기부 등)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수립		
62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국토부·기재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혁신도시 맞춤 교육프로그램 지원	
63 지역내 일자리 지원기능 통합 (고용부)			공공기관 평가지침 개정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산업별 고용실천전략 실행력 확보		
64 일자리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65 지역투자 촉진 및 시도간 협력산업 육성 (산업부 등)		지역간 협력사업 개편		신산업 육성
66 규제특례 확대 통한 지역 혁신거점 육성 (중기부 등)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 도입		산학연 R&D 거점 및 창업벤처 거점 조성	
67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산업부·국토부)			시도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실증공간 구축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⑥8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⑥9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국토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기금융자 지원		도시재생기업 지정·지원
⑦0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고용부)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사업 실시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⑦1 기간제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고용부)		기간제법·파견법 및 시행령 개정		
⑦2 정규직 채용 여건 조성 (고용부)		정규직 전환 재정·세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기업공시제 강화	
⑦3 비정규직 차별 적극적 해소 (고용부)		기간제법·파견법·출산휴가 법령 개정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연차휴가 법령 개정	
⑦4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고용부)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추진	관련법 개정 추진	
⑦5 비정규직 의견 참여 통로 확대 (고용부)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개선방안 마련	근로자참여관련법 개정 추진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9. 근로여건 개선				
⑦6-1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 (고용부)		연간 최저임금 인상		
⑦6-2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TF 운영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	산업범위 등 개정	
⑦7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중기부 등)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상생법 개정		
⑦8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 근로자 보호 (고용부·국토부)		노무비 계약예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시범사업 실시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⑦9 공정임금체계 확립 (고용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공정임금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 마련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추진	
⑧0 주 52시간 근로 명확화 (고용부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⑧1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고용부 등)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추진
⑧2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혁신 (고용부)	대형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⑧3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고용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⑧4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고용부)		사회적 대화기구 체제 정비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⑧5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고용부)	유사·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고용장려금제도 단순화 시행		
⑧6-1 청년 구직촉진수당 및 2+1 장려금 신설 (고용부)	취성패 참여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17.下~'18년)	대상 확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⑧6-2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 (고용부·중기부)	기업지원금 통합·지급 방식 간소화	참여경로 확대		
⑧7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상향(~'20년)		
⑧8 청년의 해외진출 촉진 (고용부·외교부)	청년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⑧9 블라인드 채용 활성화 (고용부)	기아드리인 마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의무화	민간기업 확산	

과제	'17.下	'18.上	'18.下	'19년~
⑩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관련인프라 구축 (고용부)	미래직업 모의체험 지원	미래직업 연구 강화	창직활동 체계적 지원	
⑪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고용부·여가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제6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마련	
⑫ 여성 경력유지 지원 (고용부·여가부)	육아휴직급여 인상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방안 마련		
⑬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 (고용부·여가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경력단절여성 특화 서비스 마련	특화서비스 시행	
⑭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확대 추진	아이돌봄 정부지원 상향 · 시간제 정부지원 확대		
⑮ 신중년근로자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고용부)	희망퇴직 남용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⑯-1 신중년근로자 신규 일자리 확대 (고용부)	신중년 고용 우선직종 개편	적합업무 신중년 고용창출 장려금 시범 지원('18년, 2,000명)		
⑯-2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단계적 확대(5만명, ~'22년)		
⑰ 신중년 창업 활성화 (중기부·고용부)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재창업패키지 사업 확대 ('18년, 3,500명)		
⑱ 귀농어·귀촌 지원 (농림부)	신중년 귀농 창업교육 확대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자금지원 확대		
⑲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근로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⑳ 외국인력 적정 관리 체계 구축 (고용부)		외국인 취업관리체계 개편		